



검 토 보 고 서

연 번	의안번호	발 의 자	의 안 명	쪽
1	455	검단구청장	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~14
2	456	검단구청장	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~24
3	457	검단구청장	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25~33
4	461	검단구청장	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34~47

2026. 7. .

자치경제위원회
사무과장(직무대리) 정홍선

‘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

검 토 보 고 서

【 검단구청장 】

의안번호 455

1. 제안경위

- 의 안 명: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검단구청장
- 발의일자: 2026년 7월 21일
- 회부일자: 2026년 7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역량을
갖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 의회사무과장의 직위
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(안 제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별첨
- 합 의: 복지정책과 합의

○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○ 본 검토보고서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, 그리고 타 지자체(특히 기초의회)의 선행 사례를 종합적으로 비교·분석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함

나. 세부검토

○ 상위법 준수 여부

1) 상위법령 부합성 및 법리 검토

- 본 개정안은 의회사무과장 직위를 '개방형 직위'로 지정하여 민간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상 원칙적으로 가능함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): 지방의회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(임용·전보·교육·훈련·복무·징계 등)을 독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
- 다만,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 제3조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.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리·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설치하고, 이와 관련된 조직개편 조례안을 발의·제안하는 것은 자치단체장(구청장)의 고유권한임

1) 제3조(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(이하 “기구”라 한다)와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.

1.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·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2.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3.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.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2: 지방자치단체의 장(강행규정은 아니나 지방의회의장 포함 해석)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 대해 공모를 통해 '개방형직위'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대통령령(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): 개정안에 명시된 상위 규정으로, 개방형 직위의 지정 범위와 임용 절차를 정하고 있어 인용 목적에 부합함

○ 타 지자체 사례 및 운영 현황 비교

- 현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(2022년 시행) 이후, 의회사무처(과)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의 편차가 있음
- 광역의회 (시·도 의회)
 - 서울시의회, 경기도의회, 충남도의회, 경북도의회, 전북도의회, 경남도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는 사무처장(2~3급 상당) 또는 담당관(4급) 직위 등을 개방형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운영 중임. 의정지원의 스펙트럼이 넓고 전문적인 입법 지원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됨
- 기초의회 (시·군·구 의회)
 - 기초의회의 사무과장(일반적으로 4급 또는 5급)을 개방형으로 지정한 사례는 아직 전국적으로 많지 않으나, 일부 기초의회가 관련 규정을 제도화 하고 있음

2)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

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·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·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
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인천 본청 포함 각 군구의 경우 관련 규정을 제정한 의회는 없음
- 사례 분석 (A): 5급 사무과장 직위를 일반임기제(개방형)로 임용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함
- 사례 분석 (B): 조례 개정은 완료했으나, 우수 인재 확보의 어려움 및 기존 일반직 공무원의 사기 저하 우려로 인해 실제 임용 단계에서는 일반직과 개방형을 복수 지정하여 상황에 맞게 운영 중임

라. 집행기관 의견제출

○ 제출의견(한규창 의원)

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의회사무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, 아래의 사유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익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철회하여야 함
 -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
 -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회적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음
 - 의회사무과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
 -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조직 안정성 훼손이 불가피함
 -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부족함

○ 검토내용(집행부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103조에 따라 의회사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만을 규정하고 있음
-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은 [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

결과 알림(의회사무과-109, 2026. 7. 6.)]에 따라 검단구 의회의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검단구의회 의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사항이며,

- 의회의 조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므로 의회의 의견과 조직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입법예고 하였음
- 검단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심의·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,
-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후 검단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

마. 종합의견

○ 기대 효과

- 의정 지원의 전문성 극대화: 새로 출범하는 검단구의회의 초기 기틀을 다지기 위해 입법·예산·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나 고위 공직 경력자를 수혈함으로써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한 차원 높게 보좌할 수 있음
- 조직의 유연성 확보: 집행기관(구청) 출신 공무원 위주의 순환보직 체계에서 벗어나, 의회 고유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상징하는 직위로 운영할 수 있음

○ 보완 과제

- 조직 내 결속력 및 사기 문제: 개방형으로 전환할 경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 및 사기 저하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함
- 임용의 현실성 (인재 풀): 처우(지방일반임기제 연봉 단가 등) 수준 대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

충분한 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함

-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절차적 정당성이나 의회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- 조직 관리의 안정성: 임기제 공무원의 특성상 단기 성과에 치중하거나, 공직 조직 내부의 행정 절차 및 집행부와의 정무적 조율 능력에서 한계점이 없도록 하여야 함

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①검단구의회 의원 전문성 강화라는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조례 개정 자체는 타당하다는 점과 ②상위법령에 위배된 것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입안으로 판단되나, 집행기관 의견제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, 아울러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수급 방안, 조직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☐ 지방공무원법

- 제29조의4(개방형직위)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12. 11., 2024. 12. 31.>
-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·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.
-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·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·변경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-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6년 7월 21일

제출자 :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행정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폭넓게 활용하기 위하여 의회 의회사무과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의회사무과장 개방형 직위 지정(안 제3조)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(26. 7. 8. ~ 26. 7. 20.) 결과, 1건의 의견 제출(별첨)
 - 제1회 검단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 결과, 원안 가결
-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동의

□ 제출항목

- 개정 조례안
- 신·구조문 대비표
-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
-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결과

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사무과장) ① ~ ③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조(사무과장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u>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과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</u>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발생요인

- 법규안명: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비용발생 요인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정하기 위함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기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

작성자 : 기획예산실장 이애선

의 건 제 출 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		○
	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		○
	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		○
	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		○
	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		○
	6. 기타 문제점		○
국(군.구)별 의견			
협약개요	국별	제 출 의 건	검 토 내 용
		‘별지’ 참조	‘별지’ 참조

□ 제출의견

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 의회사무과장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, 아래의 사유로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익성과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즉시 철회하여야 함
 - 개정의 필요성과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음
 -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회적 의혹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음
 - 의회사무과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
 -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조직 안정성 훼손이 불가피함
 -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의 투명성이 현저히 부족함

□ 검토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103조에 따라 의회사무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만을 규정하고 있음.
- 의회사무과장 직위의 개방형직위 지정은 [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 알림(의회사무과-109, 2026. 7. 6.)]에 따라 검단구 의회의 인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검단구의회 의장이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사항이며,
- 의회의 조직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므로 의회의 의견과 조직 운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「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입법예고하였음.
- 검단구의회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 심의·의결된 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철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,
-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후 검단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·의결할 사항으로 판단됨.

“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 서

【 검단구청장 】

의안번호 456

1. 제안경위

- 의 안 명: 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검단구청장
- 발의일자: 2026년 7월 21일
- 회부일자: 2026년 7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2026년 제1차 검단구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부서 신설: 혁신전략실(안 제3조)
- 기능 조정: 기획예산실 일부 기능 조정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별첨
- 합 의: 복지정책과 합의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검토보고서는 2026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‘혁신전략실’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된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,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상위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

나. 세부검토

○ 주요 내용 검토

1) 조직 구성의 법적 근거 (상위법령 검토)

- 검토 의견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, 제13조³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. 본 개정안은 검단구의 사무 분장과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 취지에 부합함

2) 부서 신설 및 기능 조정 (제3조, 제6조)

- 검토 의견: 기획예산실의 일부 전략 기능을 분리하여 ‘혁신전략실’을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직 자율권 범위 내에 있음
- 사무의 전문성: 신청사 건립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은 중장기적 전문 행정 수요가 큰 분야이므로, 별도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효율적 조직 운영 측면에서 타당함
- 업무 중복 방지: 「지방자치법」상의 사무 배분 원칙에 따라, 기존 기획예산실과 신설되는 혁신전략실 간의 사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여 업무 분절이나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

3) 제13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·군·구는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해야함

3) 업무기능 분석

- 신청사 건립 및 공단 설립: 구의 인프라를 결정짓는 핵심 업무로서 대규모 재정 투입, 타당성 조사, 주민 갈등 조정, 중앙정부/인천시와의 복합적인 협의가 수반되므로 기존 기획예산실의 예산 통제와 혁신전략실의 사업 추진 의지 사이에 실무적 조율이 필요할 것임
- 투자 유치 및 지역상생발전: 공공기관 유치나 민간 투자는 실무적으로 '네트워킹'과 '협상력'이 좌우이므로 기존의 일반 행정과는 업무 성격이 달라 외부 전문가 채용이나 관련 분야의 실무 역량을 갖춘 인력 구성이 필요할 수 있음
- 지속가능발전 정책: 구정 전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업무로서 기획예산실의 기획력과 결합하여 정책 구현

4) 의회 심의 절차 및 권한 확인

- 검토 의견: 본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. 다만,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사무의 중요성 및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.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의회의 자치입법권 및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음

나. 종합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정의 핵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 차원의 입법으로,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추가 의견
 - 시행규칙 정비: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부서별 분장 사무를 상세히 규정하여, 기획예산실과 혁신전략실 간의 업무 혼선을 원천 차단하여야 할 것임
 - 조직 효율성 모니터링: 향후 신청사 건립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완료된 후, 해당 조직의 존치 필요성과 효율성을 재검토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

- 비용 추계의 적정성 검증: 신설 조직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증액이 수반되므로, 조례안 심사 시 비용추계서의 산출 근거가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⁴⁾에 따른 예산 편성 원칙에 비추어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
 - 추진해야 할 사업의 규모(신청사 건립 등)가 매우 클 경우, 현행 '실' 단위 체계가 타 부서(국 단위)와의 업무 조율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있음. 조직의 추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'국(局)' 단위로의 격상 가능성 혹은 추진 기간을 고려한 '한시 기구(TF)' 운영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
-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상 타당하나, 신설 부서의 정원 배정과 예산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됨

4) **제36조(예산의 편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·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. &신설 2014. 5. 28.&
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[제33조](#)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[제37조](#)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.

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6년 7월 21일

제출자 :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2026년 제1차 검단구 조직개편에 따라 혁신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부서 신설: 혁신전략실
- 기능 조정: 기획예산실 일부 기능 조정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(26. 7. 8. ~ 26. 7. 20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동의

□ 제출항목

- 개정 조례안
- 신.구조문 대비표
-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검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감사실, 기획예산실, 홍보미디어실, 자치행정국, 복지국, 경제문화교통국, 안전환경국, 도시국을”을 “감사실, 기획예산실, 혁신전략실, 홍보미디어실, 자치행정국, 복지국, 경제문화교통국, 안전환경국, 도시국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삭제하고 제19호, 제20호를 각각 제15호, 제16호로 한다.

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혁신전략실) 혁신전략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·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
2.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
3.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
4.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·이행 총괄
5.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
7.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사항

제6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실, 기획예산실, 홍보미디어실, 자치행정국, 복지국, 경제문화교통국, 안전환경국, 도시국을 둔다.	제3조(실·국의 설치) ----- -----감사실, 기획예산실, <u>혁신전략실</u> , 홍보미디어실, 자치행정국, 복지국, 경제문화교통국, 안전환경국, 도시국을 둔다.
제5조(기획예산실)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	제5조(기획예산실)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
1. ~ 14.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15. 국·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	<u><삭 제></u>
16.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	<u><삭 제></u>
17.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	<u><삭 제></u>
18.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·이행 총괄	<u><삭 제></u>
19. 및 20. (생략)	15. 및 16. (현행 제19호 및 제20호와 같음)
<u><신 설></u>	제6조(<u>혁신전략실</u>) <u>혁신전략실</u>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	1. 국·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
	2.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
	3.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 유치
	4.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획·이행 총괄
	5.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	6.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
	7. 지역상생발전에 관한 사항
<u>제6조 ~ 제17조</u> (생략)	<u>제7조 ~ 제18조</u> (현행 제6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

[붙임 1]

비용 추계서(종합)

[단위:원]

구 분	조정전	조정후	추가 소요액
총급여	49,059,053,000	49,222,227,200	163,174,200

비용 추계서(전)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						비 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49,059,053,000							6개월
1. 인건비	45,969,733,000							
가. 기본급	34,841,130,000	○ 4급(연봉제)	104,933,000	6		1	629,598,000	
		○ 5급(연봉제)	92,940,000	49		1	4,554,060,000	
		○ 6급(23호봉)	4,571,300	171		12	9,380,307,600	
		○ 7급(11호봉)	3,233,400	295		12	11,446,236,000	
		○ 8급(5호봉)	2,331,700	231		12	6,463,472,400	
		○ 9급(3호봉)	2,168,000	91		12	2,367,456,000	
나. 상여금	2,322,742,000	○ 정근수당	34,841,130,000		0.4*(1/12)	2	2,322,742,000	
다. 정액수당	6,937,041,000							
1)가족수당	1,066,728,000	○ 배우자	40,000	845	0.78	12	316,368,000	
		○ 존비속	50,000	845	1.48	12	750,360,000	
2)정근수당가산금	763,80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115		12	179,400,000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140		12	184,800,000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95		12	91,200,000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95		12	68,40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120		12	72,000,000	
		○ 5년 미만	50,000	280		12	168,000,000	
3) 정액급식비	1,622,400,000	○ 일반직	160,000	845		12	1,622,400,000	
4) 명절휴가비	3,484,113,000	○ 명절휴가	34,841,130,000		(1/12)*0.6	2	3,484,113,000	
라. 직급보조비	1,868,820,000	○ 4급	400,000	6		12	28,800,000	
		○ 5급	250,000	49		12	147,000,000	
		○ 6급	185,000	171		12	379,620,000	
		○ 7급	180,000	295		12	637,200,000	
		○ 8급	175,000	231		12	485,100,000	
		○ 9급	175,000	91		12	191,100,000	
3. 포상금	3,089,320,000							
가. 성과상여금	3,089,320,000	○ 6급	4,571,300	171	1.25	1	977,115,375	A등급
		○ 7급	3,233,400	295	1.25	1	1,192,316,250	A등급
		○ 8급	2,331,700	231	1.25	1	673,278,375	A등급
		○ 9급	2,168,000	91	1.25	1	246,610,000	A등급

※ 수당 중 위험근무, 대우공무원, 관리업무, 특수업무, 민원업무, 전산업무, 장려, 의회사무, 의료업무, 동근무, 사회복지업무, 초과 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

비용 추계서(후)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						비 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49,222,227,200							6개월
1. 인건비	46,126,400,200							
가. 기본급	34,996,537,200	○ 4급(연봉제)	104,933,000	6		1	629,598,000	
		○ 5급(연봉제)	92,940,000	50		1	4,647,000,000	
		○ 6급(23호봉)	4,571,300	174		12	9,544,874,400	
		○ 7급(11호봉)	3,233,400	295		12	11,446,236,000	
		○ 8급(5호봉)	2,331,700	232		12	6,491,452,800	
		○ 9급(3호봉)	2,168,000	86		12	2,237,376,000	
나. 상여금	2,322,742,000	○ 정근수당	34,841,130,000		0.4*(1/12)	2	2,322,742,000	
다. 정액수당	6,937,041,000							
1)가족수당	1,066,728,000	○ 배우자	40,000	845	0.78	12	316,368,000	
		○ 존비속	50,000	845	1.48	12	750,360,000	
2)정근수당가산금	763,80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115		12	179,400,000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140		12	184,800,000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95		12	91,200,000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95		12	68,40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120		12	72,000,000	
		○ 5년 미만	50,000	280		12	168,000,000	
3) 정액급식비	1,622,400,000	○ 일반직	160,000	845		12	1,622,400,000	
4) 명절휴가비	3,484,113,000	○ 명절휴가	34,841,130,000		(1/12)*0.6	2	3,484,113,000	
라. 직급보조비	1,870,080,000	○ 4급	400,000	6		12	28,800,000	
		○ 5급	250,000	50		12	150,000,000	
		○ 6급	185,000	174		12	386,280,000	
		○ 7급	180,000	295		12	637,200,000	
		○ 8급	175,000	232		12	487,200,000	
		○ 9급	175,000	86		12	180,600,000	
3. 포상금	3,095,827,000							
가. 성과상여금	3,095,827,000	○ 6급	4,571,300	174	1.25	1	994,257,750	A등급
		○ 7급	3,233,400	295	1.25	1	1,192,316,250	A등급
		○ 8급	2,331,700	232	1.25	1	676,193,000	A등급
		○ 9급	2,168,000	86	1.25	1	233,060,000	A등급

“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” 검 토 보 고 서

【 검단구청장 】

의안번호 457

1. 제안경위

- 의 안 명: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 의 자: 검단구청장
- 발의일자: 2026년 7월 21일
- 회부일자: 2026년 7월 21일

2. 제안이유

- 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‘혁신전략실’ 신설에 따라, 이에 필요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일반직 5급 정원 1명을 증원하고, 6급 이하 정원 1명을 감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(안 별표3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24조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별첨
- 합 의: 복지정책과 합의
-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검토보고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 제출한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함

나. 세부검토

○ 상위법 준수 여부

- 관련 법규: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2조 및 제24조5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야 함
- 검토 결과: 본 개정안은 조직의 신설(혁신전략실)에 따른 직급별 정원 조정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으로서, 관련 법령상 정원 조정 절차와 권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추진된 것으로 판단됨

○ 정원 조정의 타당성

- 조직 신설의 필요성: 최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구정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‘혁신전략실’ 신설은 조직 운영의 전략적 측면에서 타당함
- 정원 조정의 적정성:
 - 5급(과장급) 정원을 1명 증원함으로써 신설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

-
- 5) 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시·도지사는 그 조사·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, 기관별, 직급별,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
 2. 유사·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 3. 업무의 성질상 법인,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- ④ 특별시장·통합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)는 해당 시·도와 관할 시·군·구간 또는 관할 시·군·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

책임성 있는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- 동시에 6급 이하 정원을 1명 감원하여 총 정원의 증감 없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꾀한 점은 조직 내 인력 재배치 원칙에 부합함
-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조직 신설 시 직급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증·감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일반적임

○ 예산 및 정책적 고려사항

- 비용추계서 검토: 신규 5급 정원 배치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6급 이하 감원에 따른 절감분을 비교 시,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(비용추계서상 재원 조달 방안 확인 요망)
- 예산권과 사업권의 분리: 혁신전략실의 사업 추진과 기획예산실의 재정 건전성 문제 간에 이견이 공존하므로 부서 간 실무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여, 예산 반영 단계부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
- 인사운영의 탄력성: 조직 개편 이후 신설 부서에 대한 인력 배치가 특정 직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, 향후 지속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 인력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 운영의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‘혁신전략실’을 신설하고,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으며 조례 개정의 목적과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향후 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운용 계획이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드립니다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, 정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7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6년 7월 21일

제출자 :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‘혁신전략실’ 신설에 따른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 조정 및 현안업무 추진 인력 배치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직급별 정원 조정[안 별표 3]
 - (일반직 5급) 49명 ⇒ 50명 (증 1명)
 - (일반직 6급 이하) 784명 ⇒ 783명 (감 1명)
- 기능 조정: 기획예산실 일부 기능 조정

3. 참고사항

- 입법예고(26. 7. 8. ~ 26. 7. 20.) 결과, 특이사항 없음
- 성별영향평가, 부패영향평가 등 원안동의

□ 제출항목

- 개정 조례안
-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정원관리 기관별 ·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의회사무 기 구	직속기관	동
총 계	845	-			
정무직 계	1	-			
구청장	1	1			
일반직 계	840	-			
3급	1	1			
4급	6	5		1	
5급	50	32	3	7	8
6급 이하 계	783	-			
별정직 계	4	-			
5급 상당	1	-			
6급 상당 이하 계	3	-			

[붙임 1]

비용 추계서(종합)

(단위:원)

구 분	조정전	조정후	추가 소요액
총급여	49,059,053,000	49,222,227,200	163,174,200

비용 추계서(전)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						비 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49,059,053,000							6개월
1. 인건비	45,969,733,000							
가. 기본급	34,841,130,000	○ 4급(연봉제)	104,933,000	6		1	629,598,000	
		○ 5급(연봉제)	92,940,000	49		1	4,554,060,000	
		○ 6급(23호봉)	4,571,300	171		12	9,380,307,600	
		○ 7급(11호봉)	3,233,400	295		12	11,446,236,000	
		○ 8급(5호봉)	2,331,700	231		12	6,463,472,400	
		○ 9급(3호봉)	2,168,000	91		12	2,367,456,000	
나. 상여금	2,322,742,000	○ 정근수당	34,841,130,000		0.4*(1/12)	2	2,322,742,000	
다. 정액수당	6,937,041,000							
1)가족수당	1,066,728,000	○ 배우자	40,000	845	0.78	12	316,368,000	
		○ 존비속	50,000	845	1.48	12	750,360,000	
2)정근수당가산금	763,80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115		12	179,400,000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140		12	184,800,000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95		12	91,200,000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95		12	68,40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120		12	72,000,000	
		○ 5년 미만	50,000	280		12	168,000,000	
3) 정액급식비	1,622,400,000	○ 일반직	160,000	845		12	1,622,400,000	
4) 명절휴가비	3,484,113,000	○ 명절휴가	34,841,130,000		(1/12)*0.6	2	3,484,113,000	
라. 직급보조비	1,868,820,000	○ 4급	400,000	6		12	28,800,000	
		○ 5급	250,000	49		12	147,000,000	
		○ 6급	185,000	171		12	379,620,000	
		○ 7급	180,000	295		12	637,200,000	
		○ 8급	175,000	231		12	485,100,000	
		○ 9급	175,000	91		12	191,100,000	
3. 포상금	3,089,320,000							
가. 성과상여금	3,089,320,000	○ 6급	4,571,300	171	1.25	1	977,115,375	A등급
		○ 7급	3,233,400	295	1.25	1	1,192,316,250	A등급
		○ 8급	2,331,700	231	1.25	1	673,278,375	A등급
		○ 9급	2,168,000	91	1.25	1	246,610,000	A등급

※ 수당 중 위험근무, 대우공무원, 관리업무, 특수업무, 민원업무, 전산업무, 장려, 의회사무, 의료업무, 동근무, 사회복지업무, 초과 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

비용 추계서(후)

(단위 : 원, 명, 월)

구 분	소요비용	산 출 근 거						비 고
		내역	단가	인원	비율 등	월(회)수	계	
총계	49,222,227,200							6개월
1. 인건비	46,126,400,200							
가. 기본급	34,996,537,200	○ 4급(연봉제)	104,933,000	6		1	629,598,000	
		○ 5급(연봉제)	92,940,000	50		1	4,647,000,000	
		○ 6급(23호봉)	4,571,300	174		12	9,544,874,400	
		○ 7급(11호봉)	3,233,400	295		12	11,446,236,000	
		○ 8급(5호봉)	2,331,700	232		12	6,491,452,800	
		○ 9급(3호봉)	2,168,000	86		12	2,237,376,000	
나. 상여금	2,322,742,000	○ 정근수당	34,841,130,000		0.4*(1/12)	2	2,322,742,000	
다. 정액수당	6,937,041,000							
1)가족수당	1,066,728,000	○ 배우자	40,000	845	0.78	12	316,368,000	
		○ 존비속	50,000	845	1.48	12	750,360,000	
2)정근수당가산금	763,800,000	○ 25년 이상	130,000	115		12	179,400,000	
		○ 20년~25년미만	110,000	140		12	184,800,000	
		○ 15년~20년미만	80,000	95		12	91,200,000	
		○ 10년~15년미만	60,000	95		12	68,400,000	
		○ 5년~10년미만	50,000	120		12	72,000,000	
		○ 5년 미만	50,000	280		12	168,000,000	
3) 정액급식비	1,622,400,000	○ 일반직	160,000	845		12	1,622,400,000	
4) 명절휴가비	3,484,113,000	○ 명절휴가	34,841,130,000		(1/12)*0.6	2	3,484,113,000	
라. 직급보조비	1,870,080,000	○ 4급	400,000	6		12	28,800,000	
		○ 5급	250,000	50		12	150,000,000	
		○ 6급	185,000	174		12	386,280,000	
		○ 7급	180,000	295		12	637,200,000	
		○ 8급	175,000	232		12	487,200,000	
		○ 9급	175,000	86		12	180,600,000	
3. 포상금	3,095,827,000							
가. 성과상여금	3,095,827,000	○ 6급	4,571,300	174	1.25	1	994,257,750	A등급
		○ 7급	3,233,400	295	1.25	1	1,192,316,250	A등급
		○ 8급	2,331,700	232	1.25	1	676,193,000	A등급
		○ 9급	2,168,000	86	1.25	1	233,060,000	A등급

“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”

검 토 보 고 서

【 검단구청장 】

의안번호 461

1. 제안 경위

- 의 안 명: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안 자: 검단구청장
- 제출일자: 2026년 7월 16일
- 회부일자: 2026년 7월 20일

2. 제안 이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 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(소재지: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25-2, 검단구보건소 3층, 면적: 216㎡)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것임.
- 전문인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위탁 대상 사무
 -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 -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
 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

-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
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
- 위탁 방법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
- 위탁 기간: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(※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제3항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 후 한 번만 갱신 가능)
- 조직 및 인력: 총 13명 (센터장 1, 팀장 2, 팀원 10)
- 2026년 하반기 사업예산: 244,676천원(사업실시일자 미정)

4.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발췌

- 법률: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시행령: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- 조례
 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 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)

5. 비용추계 결과

- 연도별 재정 소요 내역 (단위: 천원)
 - 1차년도(2026년 하반기): 244,676 (국비 116,688 / 시비 69,644 / 구비 58,344)
 - 2차년도(2027년): 933,462 (국비 443,431 / 시비 247,715 / 구비 242,316)
 - 3차년도(2028년): 1,033,238 (국비 490,819 / 시비 274,659 / 구비 267,760)
 - 4차년도(2029년): 1,133,480 (국비 538,426 / 시비 301,713 / 구비

293,341)

- 5차년도(2030년): 1,234,210 (국비 586,263 / 시비 328,881 / 구비 319,066)

- 5년 총계: 4,579,066천원(3년 총계 1,033,238천원)

○ 재원 조달 방안: 보건복지부 「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」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국비, 시비, 구비를 매칭하여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

6.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

○ 사전검토 결과: 적정

○ 주요 검토 항목별 요약

- 1)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: 정신건강사업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, 신속한 의료연계가 요구되므로 직영보다 민간 전문기관 운영이 적합함
- 2) 공공성 및 안정성: 영리 목적 운영 배제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
- 3) 경제적 효율성: 공무원 직접 운영 시 발생하는 호봉 상승 및 연금 부담 등을 완화하고, 민간의 전문 노하우를 활용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
- 4) 전문지식 및 기술: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 체계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·위기개입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
- 5) 성과측정 및 투명성: 보건복지부 및 시·군·구 행정실적 평가 지표 활용이 용이하며, 관련 조례에 따른 정기 지도·점검 및 시정명령 등으로 투명한 관리 가능

7. 전문위원 검토 의견

○ 법적 절차의 적법성 검토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

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업을 정신건강 전문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5조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본 안건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

○ 민간위탁의 타당성 및 실효성

정신건강 및 위기개입·자살예방 사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긴급 상황 대처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임. 공공 행정조직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, 민간의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와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서비스 질 제고 및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함. 아울러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, 조례에 따라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여 '한 번만 갱신'하도록 제한한 점은 위탁기관의 안주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됨

○ 재정 소요 및 예산 운용의 적정성

본 사업은 5개년 총 45억 7,9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 국·시보조 및 자체재원 매칭사업으로, 보건복지부 인력 배치 기준과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계되었음. 다만, 향후 센터 활성화에 따른 사업량 확대와 매년 인건비 및 사업비 상향 편성(인건비 10%, 사업비 5% 등)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(구비)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압박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

○ 따라서 향후 위탁기관 선정 시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엄격히 담당하고, 국·시비 확보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구정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면밀하고 지속적인 지도·감독이 요구됨

○ 종합 의견

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, 자살예방, 정신

질환자 체계적 관리 등 날로 증대되는 공공 보건의료 행정 수요에
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
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‘원안검
토’ 함

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46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7월 16일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함.
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 탁 자 :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
-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후 선정
- 위탁사무
 -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
 -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
 -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
 - 정신건강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사업
 -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추진
- 기관현황

기 관 명	인천광역시 검단구정신건강복지센터
소 재 지	서구 당하동 1325-2 검단구보건소 3층
면 적	216㎡
종 사 자	총13명
사업예산	244,676천원 (2026년 하반기)
수탁기관	미정

3. 참고사항
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
-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
(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)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(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)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(운영의 위탁)

☐ 제출항목

- 관련법령
- 비용추계서
-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서

관계법령발췌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(이하 "보건소"라 한다)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(이하 "보호의무자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.
-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.
- ⑦ 시·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⑧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**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**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정신건강증진시설
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
 3.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, 사업집행현황,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명세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
4.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.

☐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☐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

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」 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, 위탁기간, 위탁조건, 관리책임,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, 운영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비 용 추 계 서 (제3조제1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
- 구민을 위한 독립적인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설 및 운영비 지원 필요

2. 비용추계 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인건비
 - 보건복지부 「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」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배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
 - 센터장 1명, 팀장 2명, 팀원 10명 등 총 13명 기준
 - 기본급, 제수당,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반영
- 운영비
 - 센터 신설에 따른 공공요금, 자산취득비, 여비, 수수료 등 센터 유지관리 비용
- 사업비
 - 프로그램 운영, 홍보물 제작, 행사운영비, 소모품비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

나. 추계 결과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 하반기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출		244,676	933,462	1,033,238	1,133,480	1,234,210	4,579,066
보조금	국비	116,688	443,431	490,819	538,426	586,263	2,175,627
	시비	69,644	247,715	274,659	301,713	328,881	1,222,612

○ 1차년도(2026년 하반기) 산출내역

- 인건비: 175,666천원(국 82,183/시 52,392/구 41,091)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: 16,000,000원*5명=80,000천원
 -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: 10,545,750원*8명=84,366천원
 - (시비)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원비(급식비, 건강검진비, 복지점수): 11,300천원
- 운영비: 46,840천원(국 23,420/시 11,710/구 11,710)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: 46,840천원
- 사업비: 22,170천원(국 11,085/시 5,542/구 5,543)

-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: 22,170천원

○ 2차년도(2027년) 산출내역

- 인건비: 700,112원(국 332,256/시 192,128/구 175,728)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: 40,930,000원*12명=491,160천원
 -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인건비: 43,000,000원*1명=43,000천원
 - 자살유족원스톱사업 인건비: 42,000,000원*1명=42,000천원
 - 자살예방사업 인건비: 44,176,000원*2명=88,352천원
 - (시비)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지원비(급식비, 건강검진비, 복지점수): 26,000천원
 - (구비)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급식비: 9,600천원
- 운영비: 46,842천원(국 23,421/시 11,710/구 11,711)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: 46,842천원
- 사업비: 186,508천원(국 87,754/시 43,877/구 54,877)
 -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비: 175,508천원
 - (구비)자살예방사업 사업비: 11,000천원

○ 3차년도(2028년)부터 매년 인건비 10%, 사업비 5% 상향 편성

다. 재원조달 방안

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,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국비, 시비, 구비를 매칭하여 재원 조달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부대의견

- 정신건강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, 인력배치 기준 및 사업규모 변동 등에 따라 연도별 예산 조정될 수 있음

작성자 : 보건소 치매보건과장 신순화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6년)	2차년도 (2027년)	3차년도 (2028년)	4차년도 (2029년)	5차년도 (2030년)	계
세 입		244,676	933,462	1,033,238	1,133,480	1,234,210	4,579,066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(국·시비)		186,332	691,146	765,478	840,139	915,144	3,398,239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(구비)		58,344	242,316	267,760	293,341	319,066	1,180,827
세 출		244,676	933,462	1,033,238	1,133,480	1,234,210	4,579,066
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		244,676	933,462	1,033,238	1,133,480	1,234,210	4,579,066
재원 조달		244,676	933,462	1,033,238	1,133,480	1,234,210	4,579,066
의존 재원	소 계	186,332	691,146	765,478	840,139	915,144	3,398,239
	보조금						
	국비	116,688	443,431	490,819	538,426	586,263	2,175,627
	시비	69,644	247,715	274,659	301,713	328,881	1,222,612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조정교부금	-	-	-	-	-	-
	소 계	58,344	242,316	267,760	293,341	319,066	1,180,827
자체 수입	구비	58,344	242,316	267,760	293,341	319,066	1,180,827
지 방 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공기업 특별회계		-	-	-	-	-	-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-	-	-	-	-	-

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서

-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-

사전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검토기준	검토내용	검토결과
1. 다른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	- 직영, 민간위탁 비교	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5조(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) ·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운영의 위탁) · 「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지침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- 정신건강사업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, 신속한 의료연계 시스템이 요구되는 업무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이 적합함.
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- 정신건강서비스의 공공성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 필요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 여부	-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 예방사업 수행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함. - 수탁기관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, 전문인력 확보 및 위기대응 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.
3. 경제적 효율성	-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 시 비용절감 효과, 행정효율성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	- 직영 시 공무원 호봉상승이나 공무원연금 부담이 발생, 민간위탁시 인건비 절감 등 행정비용감소 효과 - 민간위탁 운영 시 전문인력과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함.
4.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- 정신건강 전문인력 활용 가능 여부 및 전문성 확보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 가능성	-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체계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으며, 사례관리·위기개입·자살 예방사업 등 전문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됨.
5. 성과측정의 용이성	- 사업계획 수립, 성과지표 설정 및 사업성과 측정 가능 여부	-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 군·구 행정실적 평가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, 사업계획 수립 및 연차별 사업평가, 주기적 지도점검이 가능함.
6. 사무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- 수탁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 가능성,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- 「인천광역시 검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0조(지도및감독), 제12조(위탁의취소)에 따라 정기 지도점검 시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및 위탁취소 등 관리가 가능함.
7.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	- 수탁기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민간 전문기관의 공급 가능성	-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등 수탁기관 자격을 갖춘 기관이 다수 존재함.